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을 위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국세청이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지출비용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5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55조의3제1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6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갓춘”을 “갓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갓춘”을 “갓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중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제118조의5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국세청장”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5항 및 제156조의2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증명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증명자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u>5년</u>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 ----- ----- ----- ----- ----- ----- <u>10년</u> ----- ----- ----- -----.
⑥ ~ ㉔ (생략)	⑥ ~ ㉔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 ----- ----- ----- ----- ----- -----

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1. -----

----- 2026년 12월 31일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② ~ ⑧ (생 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
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
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
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
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
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 4. (생 략)

⑩ ~ ⑮ (생 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
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
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
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0년 -----

-----.

1. ~ 4. (현행과 같음)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 11. (생략)

1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2) (생략)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5) (생략)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 4) (생략)

-----.

1. ~ 11. (현행과 같음)

12. 다음 -----

가. ----- 갖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

1)·2) (현행과 같음)

3) ----- 2027년 12월 31일-----

4)·5) (현행과 같음)

나. ----- 갖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

1) ~ 4) (현행과 같음)

12의2. · 13. (생략) ② ~ ⑩ (생략)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 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 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u>제118조의</u> <u>5제1항제3호</u>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 다. 4. ~ 10. (생략) ② ~ ⑦ (생략)	12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제118조의5</u> <u>제1항제4호</u>----- ----- --.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제216조의3제1항제4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국립유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의 2에 따른 교육비	원은 제외한다) 또는 「고등교육법」·특 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유아 교육법」에 따른 국 립유치원 및 「영유 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교육부
	다. 삭제 <2024. 6. 25.>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육비		고용노동부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2